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97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 장철민·허 영·채현일

강선우 · 김태선 · 김한규

박지원 • 이수진 • 박 정

백승아 · 장경태 · 박선원

이소영 • 민병덕 • 한병도

김남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 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양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고용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법인 별 남녀고용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 함한 지수(이하 "고용성평등지수"라 한다)를 개발·보급하고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항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제1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사항
 - 5.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조사하 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성평등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2(고용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법인별 남녀고용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지수(이하 "고용성평등지수"라 한다)를 개발・보급하고 매년 조사하여야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항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명단3.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기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기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 사항5.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u>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u> 용형태 현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성평등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